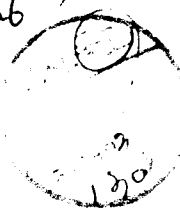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 731-6391-4 / 전송 731-6790

문서번호 주개 58501-1019
 시행일자 1993. 5. 26
 (경유)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30일	강 정
주택국장	전결	
주택개발과장	서	법무담당관심사필
개발계획계장	서	개발1계장 <i>[Signature]</i>
기안	장 광 용	개발2계장 <i>[Signature]</i>



제목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우리시가 90.5.24 제정 시행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에 대하여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 별첨과 같이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마련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코저 하오니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게재문안 : 공고안
- 나. 게재신문 : 시보 및 서울시민신문
- 다. 게재일자 : '93. 5.

- 첨부 1. 공고안 1부
 2.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끝.

(제2안)

수신 공보관

제목 공고문 시보 및 서울시민신문 게재의뢰

1.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별첨 공고안을 시보 및 서울시민신문에 게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게재문안 : 공고안
- 나. 게재신문 : 시보 및 서울시민신문
- 다. 게재일자 : '93.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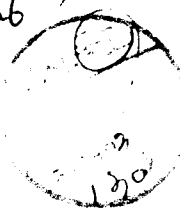
첨부 공고안 2부. 끝.

원본대조필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 731-6391-4 / 전송 731-6790

문서번호 주개 58501-1019
 시행일자 1993. 5. 26
 (경유)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30일	강 정
주택국장	건설	
주택개발과장	개발	법무담당관심사필
개발계획계장	계획	개발1계장
기안	장 광 용	개발2계장



제목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우리시가 90.5.24 제정 시행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에 대하여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 별첨과 같이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마련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코저 하오니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게재문안 : 공고안
- 나. 게재신문 : 시보 및 서울시민신문
- 다. 게재일자 : '93. 5.

- 첨부 1. 공고안 1부
 2.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끝.

(제2안)

수신 공보관

제목 공고문 시보 및 서울시민신문 게재의뢰

1.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별첨 공고안을 시보 및 서울시민신문에 게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게재문안 : 공고안
- 나. 게재신문 : 시보 및 서울시민신문
- 다. 게재일자 : '93. 5.

첨부 공고안 2부. 끝.

원본대조필

주 택 개 량 과 장

(제3안)

수신 법무담당관

제목 입법예고 공고안 송부

1. 법제사무처리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우리시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안을 별첨과 같이 송부합니다.

첨부 공고안 1부. 끝.



주 택 개 량 과 장

(제4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93.5.)와 관련임(입니다)

2.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별첨 공고안 및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송부하니(하오니) 검토후 귀국,실,과 의견을 93.6. .까지 회시하기 바람(바랍니다).

첨부 1. 공고안 1부

2.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처 서국 1-14, 관계과, 건축지도과, 주차계획담당관, 도시개발공사(재개발과)
서구1-22(주택과장)

원본대조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3. 6. .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택개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원본대조필